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4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3

발 의 자:김기현·태영호·권명호

서병수・최연숙・하태경

김석기 · 윤주경 · 김영식

윤두현·이종배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 시·도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및 관련 자료관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특별조사, 조치명 령 권한 및 훈련·교육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중에는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이 밀집한 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방특별조사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에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·보강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7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시·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·보강 및 설치비 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13조(화재경계지구의 지	정 등)	제13조(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)
① ~ ⑥ (생 략)	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⑦ 시·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
		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 시·도
		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
		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
		보수·보강 및 설치비용 등을
		지원할 수 있다.